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법률 내에서의 용어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의료”를 “공공보건 의료”로 조정하고, 제14조제1항의 “사용·수익”을 「국유재산법」과 같이 “사용허가”로 용어 정리하며, 제14조제1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14조제2항의 법문 중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함(안 제1조 및 제14조제1항·제2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공공의료”를 “공공보건의료”로 한다.

안 제14조제1항 중 “사용·수익하게 할”을 “사용허가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에”를 “대부와 사용허가에”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 립·운영하여 소방공 무원의 진료와 특 수근무 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 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목적) ----- ----- ----- ----- ----- ----- -----이바지 <u>하고, 국민에 대한</u> <u>공공의료 제공에</u> <u>기여함을</u> ----- -----.	제1조(목적) ----- ----- ----- ----- ----- ----- -----이바지 <u>하고, 국민에 대한</u> <u>공공보건의료 제공</u> <u>에 기여함을</u> ----- -----.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① 국가 는 소방병원의 설 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 도 불구하고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① - ----- ----- ----- ----- ----- <u>대부하거나 사용·</u> <u>수익하게 할</u> ----- --.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① - ----- ----- ----- ----- ----- <u>대부하거나 사용허</u> <u>가할</u> -----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u>대부</u>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 <u>대부와 사용허가에</u> ----- -----.
---	------------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36
----------	-------

발의연월일 : 2025. 8. 12.

발 의 자 : 임호선 · 정준호 · 박정현
안도걸 · 정춘생 · 이상식
위성곤 · 조계원 · 김한규
윤준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과 참혹·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

그런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이외에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공공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아니함.

또한 국립소방병원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용·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어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4조).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공공의료”를 “공공보건의료”로 하고, 제14조제1항의 “사용·수익”을 “사용허가”로 하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용어를 조정함(안 제1조 및 제14조제1항·제2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바지함”을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 공에 기여함”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대부”를 “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할”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 에”를 “대부와 사용허가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u>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u>이바지하고, 국민에</u> <u>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u> <u>여함</u> 을-----.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u>대부</u>)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u>대부</u>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u>대부</u>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u>대부</u> 등) ① ----- ----- ----- ----- <u>대부하거나 사용허</u> <u>가</u> 할-----. ② ----- ---- <u>대부와 사용허가에</u> ----- -----.